



제 43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신장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824호)

2026.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이 현 중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제한 및 재임 횟수 산정 기준 마련 ..	2
2. 임원의 결격사유 강화	9
3. 퇴임 임원 등에 대한 처분 내용 통보 규정 마련	18
IV. 입법의 재정영향	22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신장식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2. 12.

다. 회 부 일 : 2026. 2.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산림조합 등의 조합장 임기를 4년으로 정하면서 상임 조합장에 한해서는 2차에 한해 연임규정을 두고, 비상임인 조합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한편, 퇴직자의 임원 자격에 대해서는 별도로 결격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비상임조합장이 상임조합장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실에서 이들에 대한 무제한 연임은 각종 채용비리·특혜성 대출 및 일감 몰아주기 등 조합등의 고질적인 폐단을 초래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징계면직 등의 위법행위를 한 후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상임조합장의 임기를 2차례 연임으로 제한하고,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조합등의 대외적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조합등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8조, 제39조 및 제125조의2).

Ⅲ. 검토의견

1.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제한 및 재임 횟수 산정 기준 마련

개정안은 산림조합의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차례로 제한하고, 조합장이 연임하는 경우 임기만료일 전 2년부터 임기만료일까지 퇴임한 때에는 1회를 재임한 것으로, 임기만료에 따라 퇴임한 조합장이 임기만료 후 2년 이내에 조합장으로 선출되는 경우에는 연임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u>상임인 조합장은</u> 두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설립 당시의 조합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8조(임원의 임기) ① ----- ----- ----- ----- <u>조합장은</u>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u><신설></u>	③ <u>제1항에 따라 조합장이 연임하는 경우 조합장이 임기만료일 전 2년부터 임기만료일까지</u>

현행	개정안
	<u>지 퇴임한 때에는 1회를 재임한 것으로 보고, 임기만료에 따라 퇴임한 조합장이 임기만료 후 2년 이내에 조합장으로 선출되는 경우에는 연임한 것으로 본다.</u>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제38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조합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재임 중인 비상임조합장에 대해서 제38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가. 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

현행법은 조합장·이사 등 조합의 임원에 관하여, 자산 등 조합의 사업 규모가 1,000억원 미만인 경우 조합장을 상임으로 하고, 2,500억원 이상인 경우는 비상임으로 하되,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조합은 상임

이사를 두도록 하며, 상임이사는 조합장이 이사회 의 동의를 받아 추천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조합장은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 의 의장이 되며, 이 중 상임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여 업무를 집행하나, 비상임 조합장의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조합을 대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비상임 조합장의 경우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하지만, 상임이사 추천권과 총회 의장직을 맡는 등 비상임 조합장이 상임 조합장과 유사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상임 조합장과 달리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제한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비상임 조합장의 장기 재직으로 조합의 인사·재정 운영의 투명성이 저하되고, 조합원의 의사 반영 및 내부 견제 기능이 약화되는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1) 「산림조합법」 제3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① 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이사 중 2분의 1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②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 중 2명 이내를 상임(常任)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자산 등 조합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1,000억원)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조합장을 상임으로 하며,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두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산 등 조합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2,500억원)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한다.
⑤ 조합장 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조합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 의 동의를 받아 추천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 1,000억원 이상 2,500억원 미만인 경우는 선택(상임·비상임 여부에 대해 조합 총회의 의결을 받아 차기 선거에서 당선되는 조합장부터 적용)

- 2) 「산림조합법」 제36조(임원의 직무)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조합을 대표한다.
② 조합장은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 의 의장이 된다.

따라서 비상임 조합장의 장기 연임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현재 전국 산림조합 142개 중 약 133개 조합이 상임 조합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9개 조합은 비상임 조합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 비상임 조합장 9명은 5선 3명, 4선 2명, 3선 3명 및 초선 1명임.

[상임·비상임 조합장 현황]

(2025. 8월말 기준)

구분	상임 조합장	비상임 조합장
조합장 수	133	9

주) 비상임 조합장(9): 화성·수원·오산, 시흥, 고양, 광주·성남·하남, 포천, 용인, 대전, 대구달성, 김제 산림조합

※ 자료: 산림청

[조합장 연임 현황]

(2025. 8월말 기준)

구분	초선	재선	3선	4선	5선	합계
조합장 수 (비상임)	55 (비상임 1)	49	31 (비상임 3)	4 (비상임 2)	3 (비상임 3)	142
비율	38.7%	34.5%	21.8%	2.8%	2.1%	100%

※ 자료: 산림청

다만,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2차례로 제한하는 내용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2939호)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26.3.11)되어 본회의 심의 단계에 있으므로, 추가 논의의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³⁾

3) 의결된 산림조합법 개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다음과 같이 연임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음.

나. 재임 횟수 산정 기준 마련

현행법상 조합장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은 2회로 제한됨.

통상 연임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고, 임기를 마치지 못한 전임자의 연임 여부는 후임자가 직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했는지를 기준으로 함.⁴⁾

이에 조합장(A)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사퇴하여 다른 조합장(B)이 잔여 임기를 수행한 후 다음 선거에서 종전 조합장(A)이 재선출되는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연임에 해당하지 않게 됨.

이와 같은 구조에서는 조합장이 임기만료 이전 중도 사퇴하는 방식으로 연임 제한 규정을 회피할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으며,

실제 새마을금고에서는 「새마을금고법」 이사장 연임 제한(2회) 규정과 관련하여 3선 이사장이 마지막 임기 중 사직서를 제출한 후 남은 기간 측근을 당선시키고 이후 다시 선출되는 방법으로 연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바 있음.⁵⁾

이에 개정안은 중도 사퇴 후 재선출의 방법으로 연임 횟수 제한을

※ 부칙 제2조(연임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비상임조합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자(이 법 시행 이전에 정관이 개정되어 비상임조합장으로의 전환이 예정된 조합의 조합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 이후 선출되어 개시되는 임기를 그 첫 번째 임기로 본다.

4)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이사장 연임 제한 규정의 위반 여부(「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관련) [법제처 19-0646, 2019.12.12., 행정안전부]

5)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3.10.4.)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2년 이상 재임한 경우에는 임기를 다 채우지 않더라도 1회 재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임기만료 이후 2년 이내에 재선출되면 연임 횟수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조합장의 장기 재임에 따른 인사권 남용이나 조합의 사유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연임 제한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새마을금고법」은 개정안과 동일하게 2년을 기준으로 재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2023.10월)한 바 있으며.⁶⁾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도 상호조합의 편법적 연임제한 회피 방지를 위해 동일한 내용의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2025.12.22. 발표)한 바 있음.⁷⁾

다만, 산림청은 연임 제한 회피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6) 「새마을금고법」 제20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 중 일부의 궐원으로 인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선거의 경우에는 재선거 실시 전에 실시한 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남은 임기
2.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③ 이사장은 2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이 임기만료일 전 2년부터 임기만료일까지 퇴임한 경우에는 1회를 재임한 것으로 보고, 임기만료에 따라 퇴임한 이사장이 임기만료 후 2년 이내에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연임한 것으로 본다.

7) 상호금융정책협의회 제도개선 방안 : ① 잔여임기 2년 이하 조합장이 중도퇴임시 1회 재임으로 간주, ② 임기 만료 조합장이 2년 내 조합장 선임 시 연임으로 간주

※ ‘상호금융정책협의회’는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 관리 및 리스크 요인 점검, 불합리한 규제차이 개선 등 상호금융업권 현안 논의를 위해 2013년 1월에 출범한 기구로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및 유관기관인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각 상호금융중앙회(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가 참석함

안 제38조제3항을 ‘제1항에 따라 조합장이 연임하는 경우’로 규정할 경우 적용 대상이 연임 중인 조합장으로 한정되어, 초선 조합장이 임기 말에 사퇴함으로써 연임 제한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차단하기 어려우므로,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모든 재임 조합장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바, 타당한 것으로 보임.

2. 임원의 결격사유 강화

개정안은 종전의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행정처분⁸⁾ 외에 중앙회(조합감사위원회)의 회원에 대한 감사결과⁹⁾에 따른 개선, 징계면직, 직무정지 및 정직처분을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직무의 정지 또는 정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4년간 자격을 제한하며,

퇴임·퇴직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종류에 따라 자격제한 기준(개선·징계면직: 통보 후 5년, 직무정지·정직: 통보 후 4년)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6호, 제39조제1항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와 제13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 ----- ----- -----. ----- -----.
1. ~ 5의2. (생략)	1. ~ 5의2. (현행과 같음)

8) 「산림조합법」 제125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업무와 회계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관련 임직원에게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 또는 직무의 정지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또는 감봉

9) 「산림조합법」 제121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③ 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해당 회원의 조합장과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감사결과에 따라 해당 회원에게 시정 또는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관련 임직원에게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改選), 직무정지, 견책 또는 변상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변상

현행	개정안
6. 제125조제1항 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신설>	6. 제121조제3항, 제125조제1항 ----- ----- ----- ----- ----- 6의2. 제121조제3항, 제125조제1항 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따른 직무의 정지 또는 정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제121조제3항, 제125조제1항 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임원이나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현행	개정안
<u><신 설></u> 7. ~ 13. (생략) ② · ③ (생략)	6의4. 제121조제3항, 제125조제1항 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직무의 정지 또는 정직의 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임원이나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는 날부터 4년(통보가 있는 날부터 4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6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6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 1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제3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에 대해서는 제39조제1항(제122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행법은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행정처분(「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행정처분 포함)에 따른 임원의 ‘개선’이나 직원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에 따르면 조합등이나 중앙회의 위법한 업무 처리에 대하여 산림청장(제125조제1항)이나 금융위원회(「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가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에 따라 중앙회 회장(제121조제3항)도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회 회장의 요구에 따른 징계처분은 임직원의 결격사유에서 누락되어 있음.

또한, 임원의 결격사유를 ‘개선’ 또는 ‘징계면직’ 등 위법행위에 대한 일부 행정처분에 한정하고 있어, 직무정지 및 정직 등 실질적으로 책임이 중대한 징계 유형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격제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더욱이, 징계절차 진행 중 임기만료 또는 자진 퇴임·퇴직 등의 방식으로 처분 확정 이전에 직위를 이탈할 경우 자격제한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적 공백이 존재함에 따라 임원의 자격제한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즉, 현행 법체계는 재직 중 위법행위가 있었음에도 퇴임 이후 징계가 이루어진 경우나, 감사결과 사후적으로 위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 대해 임원 자격 제한을 두지 않아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재직 여부에 따라

제재 수준이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재의 형평성 및 제도의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음.

【 최근 10년간 산림조합 징계현황 】

□ 최근 10년간('16-25년) 퇴직자 중 징계처분된 임직원 현황

* 재임기간이거나 퇴임이후에 징계 처분된 자를 말함

구분	계	개선	직무정지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임직원	127	5	6	4	9	12	36	55

□ 최근 10년간('16-25년) 퇴직자 중 퇴직이후 징계처분된 임직원 현황

* 퇴임이후에 징계 처분된 자를 말함

구분	계	개선	직무정지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임직원	53	4	5	2	4	5	13	20

※ 자료: 산림청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 등 다른 협동조합의 경우, 직무정지·정직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이나 ‘재직 중이었다면 제재 대상이 되었을 사람’도 임원의 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입법례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현행법의 결격사유 규정은 제재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므로 유사 제도와 비교할 때 규율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고, 제도 간 형평성 측면에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 임원의 결격사유 관련 개정안 유사 입법례 】

법률명	관련 조문
새마을금고법	제21조(임원의 결격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른 상근이사는 제1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징계면직 또는 해임된 사람으로서 징계면직 또는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의2.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직무정지(업무의 집행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정직의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재조치 종료일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재직 또는 재임 중이었더라면 징계면직 또는 해임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직원이나 임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이 퇴직 또는 퇴임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직 또는 퇴임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의2.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직무정지 또는 정직의 제재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임원이나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는 날부터 4년(통보가 있는 날부터 4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6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6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임원 등의 자격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해임[제8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원에 대한 개선(改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거나 징계면직된 사람으로서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취소 사유의 발생에 직접적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으로서 그 법인이나 회사에 대한 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직·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 조치를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해임요구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

법률명	관련 조문
	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직·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 조치를 요구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6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6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특히, 산림조합은 협동조합으로서 회원을 위한 신용사업 및 경제사업을 병행하고 있어, 임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은 조합의 신뢰도 및 경영 건전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조합 운영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회원의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유형을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징계유형별 자격제한 기준을 구체화하며, 퇴임·퇴직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징계 유형에 따른 자격제한 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징계 회피를 방지하고 임원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직무정지 또는 정직 처분을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직무정지 또는 정직 처분은 일정 기간 지속되는 제재이므로, 결격 사유의 기산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직무정지 또는 정직 처분은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제재 기간 중 상당 부분이 결격기간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처분을 받은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직무정지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재조치 종료일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둘째, 직무정지 또는 정직 처분과 관련하여 현행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당연퇴직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 제39조제2항에서는 현직 임원이 제3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¹⁰⁾

그러나 직무정지 또는 정직 처분은 당연퇴직의 성질을 가지는 처분이 아니므로 결격사유 중 안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당연퇴직 사유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산림청은 임원의 높은 도덕적 기준을 정립하여 법적·윤리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¹¹⁾

10) 「산림조합법」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와 제13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각 호 생략>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반면, 산림조합중앙회는 개정안이 “직무의 정지” 또는 “정직”의 처분까지 임원의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퇴직자의 경우 해당 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임직원까지 4년간 출마를 제한하는 것은 처분의 경중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제한이므로 현행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한편,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대표발의_의안번호 제2216819호)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대표발의_의안번호 제2216816호)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1) 개정안은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으로 발표(2025.12.22.)한 사항임.

※ 상호금융정책협의회 제도개선 방안

① 「지배구조법」상 임원자격 제한 요건을 상호금융권에 도입

- (자격제한) 문책·감봉 이상, (기간) 문책·감봉 3년, 직무정지(정직) 4년, 해임(면직) 5년

② 농협·수협·산림조합의 퇴직자 제재근거 마련 (*현행 「신용협동조합법」 미반영)

- 「신용협동조합법」 특례조항(§95)에 농·수·산림의 퇴직 임직원 제재근거 조항(동법 §84의2) 추가

3. 퇴임 임원 등에 대한 처분 내용 통보 규정 마련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중앙회 회장으로 하여금 퇴임 임원 등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조합등 및 중앙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조합등과 중앙회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25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처분 내용의 통보) ① 산림청장과 회장은 조합등 또는 중앙회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 내용을 중앙회 또는 해당 조합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21조제3항, 제125조제1항 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따른 임원의 개선(改選) 또는 직무의 정지 2. 제121조제3항, 제125조제1항

현행	개정안
	<u>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따른 직원의 징계면직</u> <u>또는 정직</u>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u>중앙회 또는 조합등은 이를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u> 부 칙 제4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처분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은 실제 임원을 선출하여야 하는 조합 또는 중앙회가 퇴임 임원 등에 대한 징계 요구 권한을 가진 산림청장 등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퇴임 임원 등에 대한 임원 결격사유 규정을 마련하는 경우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산림청장(제125조제1항)이나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제121조제3항)과 금융위원회(「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의 징계 요구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산림청장 및 중앙회 회장으로 하여금 퇴임 임원 등에 대한 처분 내용을 중앙회 또는 해당 조합등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처분 내용의 통보 주체에서 제외하고 있음.

「신용협동조합법」의 경우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규정(제84조의2)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으나, 동 조항은 산림조합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따른 징계 조치를 통보하기 위해서는 징계요구권자인 ‘금융위원회’도 개정안의 처분 내용 통보의 주체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¹²⁾

12)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정관·규정에서 정한 절차·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 또는 중앙회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해서는 개선, 직무의 정지 또는 견책
2.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또는 견책
3.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

제84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제96조에 따라 제8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중앙회장은 조합 또는 중앙회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다라면 제84조제1항 또는 제89조제7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합 또는 중앙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조합 또는 중앙회는 이를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95조(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으로 본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신용사업을 하는 품목조합을 포함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을 포함한다)
3.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제4항, 제30조의2(제72조제8항 또는 제7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호·제6호,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45조의3, 제78조제1항제3호(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한 검사·감독만 해당한다)·제5호, 제78조제6항, 제79조의2, 제83조, 제83조의2, 제83조의3, **제84조**, 제89조제3항, 제96조, 제101조제1항제1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퇴임 임원 등에 대한 처분 내용 통보 관련 유사 입법례 】

법률명	관련 조문
새마을금고법	제79조의5(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명령내용의 통보) ① 주무부장관과 회장은 중앙회 또는 금고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명령내용을 중앙회 또는 해당 금고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74조의2제1항(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원의 해임 또는 직무정지 - 제74조의2제1항(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원의 징계면직 또는 정직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중앙회 또는 금고는 이를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제96조에 따라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중앙회장은 조합 또는 중앙회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84조제1항 또는 제89조제7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합 또는 중앙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조합 또는 중앙회는 이를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IV. 입법의 재정영향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되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동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를 제출하였음.¹³⁾

문 의 처
02)6788-5423

13)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는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안뿐만 아니라 재정지출이 순감소 또는 재정수입이 순증가하는 경우와 같이 재정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법안도 포함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